

##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7183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 3

## 【부 령 령】

○국방부령제893호(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 3

○국토교통부령제314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4

##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3호(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5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5호(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및 해제) ..... 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95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7

○환경부고시제2016-98호(가야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네이처센터>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7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7호(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7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8호(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72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9호(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72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0호(LH전문시방서 개정) ..... 72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3호(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72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4호(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730

○해양수산부고시제2016-65호(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735

○문화재청고시제2016-32호(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7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0호(하천점용 허가)..... 73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1호(항로표지 현상변경<등명기 변경>) ..... 73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1호(하천수사용 허가)..... 7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2호(하천수사용 변경허가)..... 7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3호(하천수사용 허가)..... 74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4호(하천수사용 허가)..... 74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6호(하천수사용 허가)..... 7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7호(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 741

(이면 계속)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8호(하천수사용 허가).....	742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74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40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744

##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6-29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5호(금융투자업 등록).....	76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8호(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9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6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4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766
○환경부공고제2016-454호(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767
○환경부공고제2016-456호(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68
○환경부공고제2016-460호(2016년 4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768
○환경부공고제2016-461호(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771
○환경부공고제2016-462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7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84호(신기술지정 신청).....	77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0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773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9호(HACCP 적용 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774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72호(은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774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73호(은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77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8호(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77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7호(시정권고 재결).....	780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6-10호(공시송달).....	78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6호(행정처분 사전통지).....	78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2호(공시송달).....	78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3호(공시송달).....	78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4호(공시송달).....	783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공시송달).....	786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공시송달).....	788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121호(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결정 등).....	789
○인천광역시공고제2016-709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795
○울산광역시공고제2016-684호(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변경).....	796
○충청남도공고제2016-716호(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	796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797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798

- 영업비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한 심의신청서류에는 영업비밀 핵심사항이 기재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학사고 위험정보 공유의 실익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 및 심의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기본공개정보) 화학물질 통계조사 완료 후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명확히 함(안 제3조 개정)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여 공개청구시 공개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기본공개대상으로 조정함
- (심의절차) 심의신청서 제출방법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로 명확히 함(안 제4조 개정)
  - 심의신청서 첨부서류를 구체화하고, 심의신청항목과 심의신청 요지·이유서의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제3호 및 제4호 서식 신설)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공개청구시 영업비밀 입증서류 등을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자료보호) 심의신청서류 등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료로 취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인가한 자만 보호자료를 취급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만 복사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6.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84호

###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대성스틸랜드, ② 동부건설(주), ③ (주)삼안, ④ (주)포스코건설
- 나. 전화번호 : ① 031-403-0545, ② 02-3484-2383, ③ 02-2141-7531, ④ 032-748-1752

2. 명칭 : 미세오차 조정이 가능한 그라운드앵커 두부시공공법(SM 브라켓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구조물 축조를 위한 가시설 공사에서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는 그라운드앵커의 두부시공공법에 관한 것으로, 설치 각도 조정 기능과 각 단계별 설계축-시공축 미세오차 수용 기능을 갖고 아치작용으로 강연선에 도입된 긴장력을 띠장에 전달하는 곡면아칭구조의 곡면측면접판과 지압 재하판의 이탈방지 접판가이드가 있는 곡면 앵커브라켓을 상하 띠장에 조립설치한 후, 강연선을 긴장하여 접판가이드를 따라 이동하는 지압 재하판에 정착시켜 긴장력을 상하 띠장으로 분배시킴으로써 가설 흙막이 벽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두부시공공법이다.

<범위>

각도조정과 미세오차 수용이 가능하고 아치작용으로 긴장력을 띠장에 전달하는 곡면 앵커브라켓을 띠장에 고정하고, 이탈방지구조를 가지고 곡면 앵커브라켓의 곡면을 따라 이동하는 지압 재하판을 설치하여 앵커체의 두부를 정착시키는 그라운드앵커 두부시공공법(SM 브라켓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0호

방송통신기자채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채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주)에이치시티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주)에이치시티 지정번호 KR0032	<input type="checkbox"/>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선 시험종목 103-3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 kbps) 109 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2016. 5.24.